



제420회국회(임시회)
제2차 환경노동위원회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
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〉

■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4610호)

2025. 1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3
1.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	3
IV. 참고자료	6
1.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사례	6

I. 제안경위

2024년 10월 8일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·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.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,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임. 또한,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함.

이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, 그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여 국가·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충

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).

Ⅲ. 검토의견

1.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활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

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생산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(이하 “표준시나리오”라 한다)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 수행 시 우선 활용하게 하고,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) ①·② (생략)	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0조제2항제5호, 제11조제2항제3호,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, 제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40조제1항,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<u>활용할 수 있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 <u>활용하여야 한다.</u>
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<u>필요한 시책</u> 을 강구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시책</u> ----- -----.

현행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¹⁾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·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, 온실가스·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여야 함.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책 마련 시 표준시나리오를 활용²⁾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, 실제 그 활용 현황 파악 및 점검을 위한

- 1)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·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, 온실가스·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(이하 “표준시나리오”라 한다)를 생산하여야 한다.
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,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2) 표준시나리오 이용 현황 : 민간(49.3%) > 학계(26.9%) > 공공기관(9.1%) > 연구기관(8.0%) >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(6.2%)(2024년 상반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분석 결과(기상청, 2024.7.5.))

체계는 미흡한 실정임. 개정안은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용 의무를 제도화하고, 기후위기 대책에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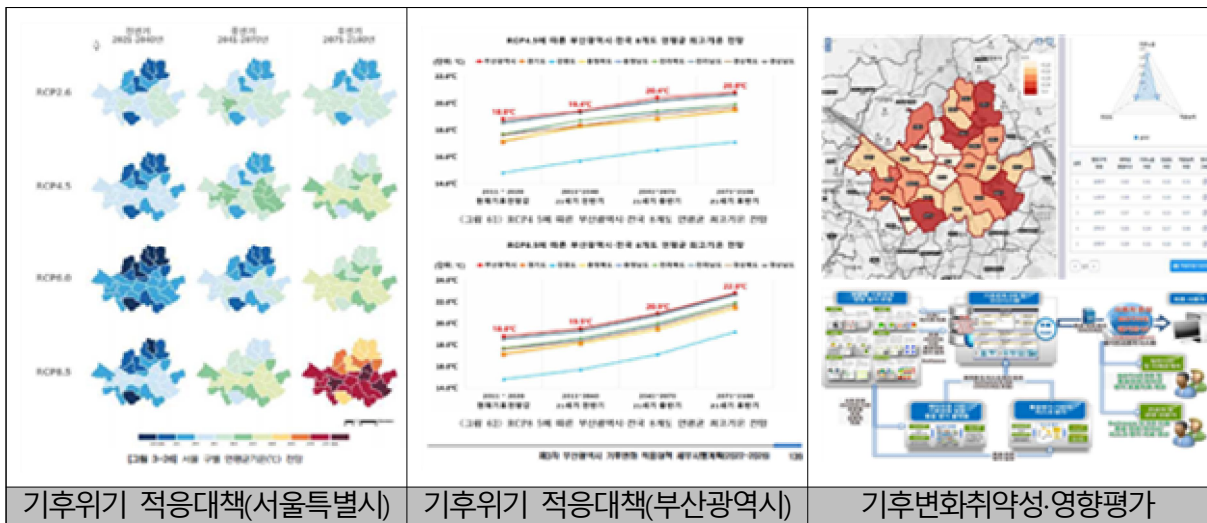
다만, 표준시나리오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,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, 실제로 입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실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, 실태조사 명칭을 “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”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542

참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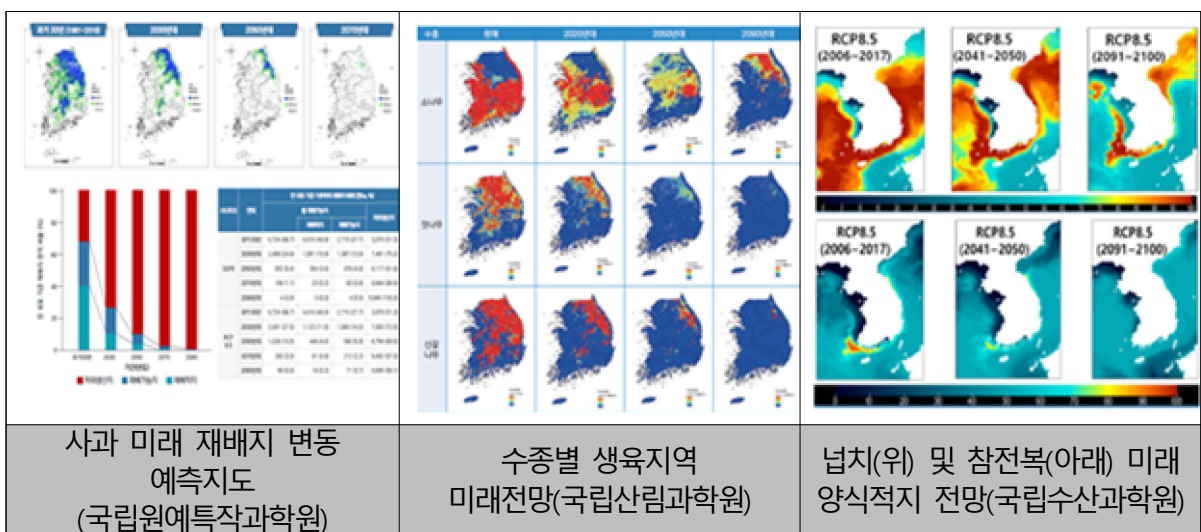
- **(정책)** 부처/지자체/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, 사업자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위해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, 극한기후지수 등 활용

※ (예시)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·취약성 평가를 위한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모형(MOTIVE), 취약성 평가도구(VESTAP)에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입력자료로 활용



<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>

- **(연구/학계)** 농업, 물관리, 재난·재해, 산림, 생태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분석



< 부문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사례 >